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4. 9 선고 2014가합589003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

피고1. 주식회사 A

2. B

3. C

변론 종결2015. 3. 26.

판결 선고2015. 4. 9.

주 문

1. 피고 주식회사 A,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3,536,719원 및 위 금원 중 213,533,602원에 대한 2014. 9. 23.부터 2014. 12. 10.까지는 연 12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2. 가. 피고 B과 피고 C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. 1. 27.체결한 매매계약을 93,340,92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
나. 피고 C는 원고에게 93,340,929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가. 피고 주식회사 A(이하 '피고 회사'라 한다), B에 대한 청구

원고와 피고 회사가 2012. 5. 31.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한 후,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원고가 2014. 9. 23.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피고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하여,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인 위 피고들을 상대로 한 이행 청구

나. 피고 C에 대한 청구

원고가 위 가.항과 같은 피고 B의 채권자로서,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4. 1. 27.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, 수익자인 피고 C를 상대로 한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[위 각 부동산에 이미 마쳐져 있다가 위 매매 후에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으므로, 원상회복의 방법은 가액배상에 의하며 매매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위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(시가에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금액) 중 적은 것의 한도로 함]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(자백간주)

재판장판사김현룡

판사장윤식

판사황정언

별지